

第244回國會  
(臨時會·閉會中)

#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1月13日(火)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소위원회구성건의건

## 審査된案件

- |                           |   |
|---------------------------|---|
| 1. 위원장선임의건 .....          | 2 |
| o 위원장(李在五)인사 .....        | 2 |
| 2. 간사선임의건 .....           | 3 |
| o 간사(오세훈·咸承熙·천정배)인사 ..... | 3 |
| 3. 소위원회구성건의건 .....        | 4 |

(보 고)

(10시11분)

○立法調査官 田春浩 田春浩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나라당 李在五 위원, 권영세 위원, 박종희 위원, 손희정 위원, 심규철 위원, 오세훈 위원, 원희룡 위원, 李方鎬 위원, 이병석 위원, 정의화 위원, 새천년민주당의 咸承熙 위원, 金聖順 위원, 金孝錫 위원, 張誠源 위원, 黃昌柱 위원,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위원, 김성호 위원, 유시민 위원, 정장선 위원, 비교섭단체의 金學元 위원, 이상 스무 분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 등 15건의 청원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첫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국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 가운데 최연장 위원이신 張誠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張誠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임시 사회를 맡게 된 張誠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당리당략에 의해서 논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 위원장선임의견

○委員長職務代行 張誠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관례에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국민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張誠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지난 12월 말로 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만료되고 다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바로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위원장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李在五 위원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본 우리 李在五 위원은 평생을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변화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분입니다.

다른 어떤 분도 다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마는 그 가운데 李在五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평생의 정치소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 획기적으로 이끌어주실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李在五 위원을 본 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張誠源 李在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이병석 위원의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달리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병석 위원께서 추천하신 李在五 위원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李在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 위원장직무대행, 李在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李在五)인사

(10시18분)

○委員長 李在五 먼저 바쁘신 시간인데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회의를 하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반 의견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7대 총선이 90여 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치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큰 책임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의견 차이로 선거법 개정을 못해서 현재 모든 지역구가 위헌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또 원래 정치입법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이거나 물리적으로 강행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위원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관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있을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관계법은 여야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安秉玉 전문위원입니다.

李秉吉 입법심의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른 직원들은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간사선임의견

(10시21분)

○**委員長 李在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오신 분을 선임해 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오세훈 위원님을, 새천년민주당에서는 威承熙 위원님을, 열린우리당에서는 천정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분을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간사(오세훈·威承熙·천정배)인사

○**委員長 李在五**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위원** 오세훈 위원입니다.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치개혁 특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발전이 5년, 10년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뒤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개혁특위의 경우에는 늘 당의 입장이나 정파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개특위만큼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다음 威承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威承熙 委員** 威承熙 위원입니다.

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이 지난 연말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올바른 의정활동의 하나의 기본이 된다는 것, 또 정치개혁의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국민적 염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면 그동안 4년 동안의 제 의정활동의 경험에 비추어서 모두 상당히 개혁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다음 천정배 위원님!

○**천정배 위원** 천정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벌써 했수로는 3년째 정치개혁특위 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간사를 맡게 되어서 가슴이 매우 설레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번만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돈 정치를 청산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이번에 꼭 정개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운영에 있어서도 이번만큼은 국민들과 함께 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국회의원들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국민에게 우리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위원장으로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위원으로 다 선임되었고 특히

세 분 간사 위원님들도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의정활동을 같이 해 오면서 서로 우의가 돈독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는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회의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위원님들부터 앓은 순서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 위원님!

○**金聖順 委員** 지난 해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처리 못 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黃昌柱 委員** 민주당 黃昌柱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이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적인 법안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요구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실망 드러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확기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그러한 정치개혁특위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일하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유시민 위원입니다.

이번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저의 이력서에 오래도록 영광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정개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정의화 위원님!

○**정의화 위원** 정의화입니다.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개혁법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오늘 李在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한 협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적정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국민이 여망하는 좋은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위원** 원희룡 위원입니다.

이제 새로 개편된 정개특위에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모쪼록 기한 내에 최선의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종희 위원**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개특위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정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다음 총선에 차질이 없도록 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경험이나 능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특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정장선 위원님 지금 오셨지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이 저희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소위원회구성 의견

(10시30분)

○**委員長 李在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개혁특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소위원회, 정치자금법소위원회, 정당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소위원회 위원 수와 위원 선임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합의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선거법소위원회는 10인, 정치자금법소위원회는 6인, 정당법소위원회는 4인, 아마 이렇게 지난번에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과 간사 분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님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촉하셔서 소위원회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행에 따라 특정 교섭단체 위원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며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특위 운영 일정과 관련하여 열린 우리당의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치개혁법은 이미 오래 전에 입법이 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4월 15일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공포되어서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총선 90일 전에도 입법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각 당이 그동안 합의하고 또 범국민정개협에서 마련한 안에 의하면 대체로 신인들이 총선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120일은 물론이고 90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점에 관해서 매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논의를 해서 개혁안을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이 1월 13일입니다마는 다음주 후반에 들어가면 설 연휴가 있고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매우 시급합니다.

한편으로는 각 당에서 안이 마련되어 있고 또 범국민정개협의 안도 있고 해서 비록 정개특위가 새로 구성되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밤샘 토론까지 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못 할 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우리 특위가 내일부터 활동을 개시해서 14, 15, 16일 이번 주 수, 목, 금 3일 동안 2박 3일간 밤샘이라도 해 가면서 논

의와 협상을 진행하고 3일간에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TV나 언론사에 협력을 요청해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야말로 끝장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밤 새워서 토론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정치개혁안을 모조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정 전에 특위 차원에서는 정치개혁안을 모두 확정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2월 국회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2월 2일이라도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늦었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하고 구체적인 것은 바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사 간의 접촉을 통해서 확정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유시민 위원님!

○유시민 위원 위원장님께…… 앞으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민원입니다.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져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속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李昌熙 수석전문위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표결 처리가 시도되었을 당시에 수석전문위원의 행동방식이나 여러 가지 회의진행을 돕는 방식을 볼 때 수석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기보다는 특정 정파에 쏠려 있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대단히 많은 식으로 지금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했다고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헤아려 보셔서,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상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임무이지 기자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저

런 발언을 하거나 또는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지극히 편향된 해석을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많은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회의 공개 여부는 소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해 주시고요. 전체 회의는 가급적이면 제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李昌熙 수석전문위원 문제는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金學元 위원님이 지금 오셨는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金學元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위헌적 사태를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공정한 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늦게나마 우리들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정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장선 위원** 이번 정치개혁, 우리가 하는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큼니다.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정치권이 나중에 부정선거 이런 것에 휘둘릴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지난번에 야 3당 합의안을 그때 저희한테는 보여 주지도 않고 야 3당한테만 제출해 주고 위원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니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시민 위원이 얘기하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웃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웃고 있는데 반드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석전문위원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으로 처음 왔기 때문에, 또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직원이고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도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張誠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張誠源 委員** 張誠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마쳤어야 할 선거법 개정을 마치지 못하고 위헌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 국회가 누구보다도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잘 준수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1년 전에, 그러니까 4월 15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작년 4월 15일 전후해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고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규정을 당리당략에 의한 협상 때문에 이것을 작년 4월 15일 전까지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제2차 정개특위를 우리가 열고 있는데 참으로 너무나 없이 어느 당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된 저변에는 바로 당리당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각 당이, 아닌 말로 한 건씩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알팍한 술수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개혁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심장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기분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에도 안 될 리야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추태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안을 만드는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호양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칩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종희 위원님!

○**박종희 위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작년의 정개특위 활동을 보면 20차 가까이 회의를 열어서 정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결과들이 소위에서 대략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를 개혁과 반개혁이라는 잣대로 몰아 버리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활동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토론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하면 남은 녹음기를 틀 듯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절대 이번 특위는 그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껏 정치개혁 입법이 탄생하지 못한 것은 ‘내 것은 선이고 남의 것은 악이다’ 하는 이분법적인 잣대, 아집과 정쟁 때문에 여태 이려고 있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효율적으로 정말 당리당락을 배제하고 국민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한계에서 정치개혁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신과 아집’ 이것을 지난 정개특위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파적인 이익을 배제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정치개혁특위안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중심으로 정치개혁안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게 될 텐데 이번만큼은 정말 철저한 소위 중심의 의사진행에 동의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소위에서 해당 소위 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동의한 내용조차도 다시 전체 회의에 나와서 소위에서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정반대의 의견을 소위 위원이 제기함으로써 그 소위 위원의 의견과 소위 위원이 속해 있는 당의 당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혼선을 빚는 경향에 대해서, 지난 연말까지의 정개특위 활동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개혁안을 일괄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합

의를 도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소위 단위에서 거기에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것은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 올리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밤을 새우든 논의를 하든 그렇게 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의견 개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뒤엎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정개특위의 시간을 허송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적 반응의 때를 놓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소위 중심의 정치개혁안 산출에 대한 철저하고도 진지한 의사진행을 통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 소위 중심으로 얘기를 끝낸 다음에, 그 과정에 각 당의 여러 가지 당론을 충분히 수합해서 나오고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 자체가 뒤엎어지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허송하는 그런 의사진행은 안 되도록 각 별하게 위원장님께서 관심과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黃昌柱 委員** 제가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님, 그리고 유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국회에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정개특위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선배 위원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저는 아직까지 가슴에 정의감이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분위기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일의 분위기는 이 자리에 열린우리당 위원님들께서 점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와서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는 다르게 유인물 자료는 이미 다 배포가 되어서 늦게 온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늦게 와서 李昌熙 위원님과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절대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요상 위원장님께서 보필을 받기 위해서 하문을 하셔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아마 李昌熙 수석은 언어폭행이라든가 폭행을 당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감정이 좀 격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처음 인사말씀에서 다들 ‘잘해 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서두에 이렇게 전문위원을 모략하고 사실과 왜곡되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입을 막겠다, 전문위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하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의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합의해 놓고 TV카메라나 언론 기자들 앞에서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합의했으면 합의한 사실대로 해야지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비애를 느껴 왔습니다.

제가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위원장!

○**委員長 李在五** 김 위원, 또 그 얘기입니까?

○**김성호** 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말씀하시지요.

○**김성호** 위원 1차 정개특위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1차 정개특위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완전히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2차 정개특위 활동을 하게 되면 1차 정개특위의 과오, 잘못이 되풀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1차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무효의 상태에서 원점에서 2차 정개특위 활동을 벌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정개특위가 사실상 성공을 했고 아니면 절반의 성공이라도 거두었다고 하면 정개특위 위원 자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4당이 전부 다 전면적인 정개특위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진 부분은 바로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정개특위 각 소위에서 활동할 때에도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또 각 당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관련 법을 다루는 것이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원희룡 위원님!

○**원희룡** 위원 1차 정개특위의 합의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적되는 것은 당리당락을 떠나서 제한된 기간 내에 다가오는 선거를 포함한 근본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또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은 사실 정당 간의 의석 배분에 의해서 우리가 대표로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박종희 위원님!

○**박종희** 위원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님의 “1차 정개특위가 실패로 입증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언짢네요. 왜냐하면 지난번 정개특위 위원을 하시던 분이 다 바뀐 것도 아니고 현재 열한 분이 계십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위원님이 아주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계속해 봐야 뻔합니다. 2차 정개특위 결말도 뻔합니다.

여기서 토론해서 결말 안 나면 또 원내총무한테 넘기고 또 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정개특위에서 있었던 몸싸움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게 만들 것입니까?

철저하게 소위 중심으로 하고, 사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당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갑론을박하다가 선거 한 두 달 전까지도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16대 국회의 가장 큰 오명이 정치 개혁 입법안을 탄생시키지 못한 과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위원회 중심으로 밀도 있게 토론하고 또 거기서 합의된 안은 전체 회의에서 대략적으로 통과시키는 운영이 아니면 절대로 이번 정개특위도 국민들이 바라는 안을 제시한 안에 통



과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威承熙 위원님!

○**威承熙 委員** 저는 지난번에 위원으로 관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고 또 제가 소속된 법사위원회 간사라든가 정보위원회 간사 활동이 더 중요했고 해서 깊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이제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또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들을 전부 고려해 볼 때 아까 천정배 위원이나 다른 몇몇 위원들이 제시했듯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끝마쳐야 되겠다, 또 국민적 염원이 무엇인지도 대충 알았기 때문에 가급적 개혁적으로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토론들이 무시되어서는 아니되고 그것들이 잘 기초가 되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할 생각입니다.

단지 한 가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또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는 잘못된 제도, 잘못된 법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올바른 의정 활동 또는 정치 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제도 중에는 개혁, 비개혁과는 관계없이 또 선악과는 더더욱 관계없이 단지 하나의 제도일 뿐이고, 무색 투명한 제도일 뿐이고 그 제도는 각 당 또는 각 의원에게 경우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는 단순한 하나의 중립적인 제도일 뿐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비개혁, 유리하면 개혁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의원들의 성향, 또 일부 언론의 성향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개혁적인 측면에서 바꾸어야 할 제도조차도 그것과 혼동되어 가지고 전체가 잘못 매도되고 국민의 시각, 국민의 보는 관점을 오도시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개혁과 비개혁의 문

제와 단순한 제도의 문제인 것들을 잘 구분해서 개혁과 비개혁의 문제는 제가 염려 안 할 정도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개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개혁 비개혁과 관계없는 순수 중립적인 하나의 제도일 뿐인 것, 그것들은 그것대로…… 물론 다수라고 해서 자기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자기 아집만 고집하는 이런 것도 좀 지양해서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金聖順**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聖順 委員**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저만 빼 놓고 다 하신 것 같아서…… 사실 말해 봐야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 들어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혁을 어느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의 전유물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국회가 어떤 타협의 장이지 투쟁의 장입니까? 그런 것에 문제가 있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해에 당론에 좀 맞지 않지만 타협을 하기 위해서 당론과 맞지 않는 의견도 내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지난해에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아까 “1차 때 부분적으로 합의 본 결과를 백지화하고 다시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할 경우, 지난해에 하던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되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수없이 논의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하루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아까 위원장께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존중한다’는 말씀보다는 “좋게 타협해서 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강력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안들이, 사실 정치 역사상 이렇게 개혁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컨대 상향식 공천이나 지구당 없애는 것만 해도 얼

마나 엄청나게 개혁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또 설혹 자기 의견에 좀 반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당론을 고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투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정의화 위원님!

○정의화 위원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말에 ‘한술에 배부르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지고의 가치가 있는 아주 완벽한 것을 이루어 내려고 또 널 자신이 있다고 얘기해 왔지만 결국은 그 모양 그 꼴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 그리고 투명한 정치자금’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처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에 있어 상당히 많이 근접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듯이 또 바라고 있듯이 최소한 정치자금법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내면, 나머지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더 많은 법들이 완벽하게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특위에서는 의원 정수문제와 인구 하한선문제 등등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시간도 없긴 하지만, 당리당락을 떠나서 합의도출에 서로 마음을 비우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한다면 합의가 안 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구정 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첫째는 이 정개특위에 각 당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자기 당의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당리당략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각 당이 제안한 안이라 하더라도 각 당의 성과물이 아니라 정개특위 모두의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은 소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0명이 다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에서 모든 문제에 합의해서 합의된 안을 전체회의에 넘겨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소위는 공개하고 속기록으로 기록을 남겨서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내 문제나 당의 대외투쟁이나 대야투쟁 때는 다소 강경하게 나가고 강성으로도 하지만 이것은 정치개혁의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자체가 정치개혁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개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총무단에 넘기는 일은 없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는 한은 정말 몇 밤을 새서라도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지 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다고 해서 총무단에 다시 넘기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빠른 시일 안에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전부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出席委員(16人)

권영세	金聖順	김성호	金學元
박종희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이병석	李在五	張誠源	정의화

정장선 천정배 咸承熙 黃昌柱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입법심의관                   李秉吉

【報告事項】

○議案回附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2002년4월15일 김학원·정균환·이재오·박종우·이강두·정우택 의원 외 34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2002년5월20일 김명섭·김태홍·손희정·조정무·고진부·김홍신·김방림·김성순·최영희·배기선·유재건·민봉기·이재정·이훈평·윤여준·홍준표·배기운·김민석·이종걸·이호웅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

(2002년7월9일 정범구 의원 외 23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장성원 의원 대표발의)

(2002년8월26일 장성원·이훈평·정장선·김홍신·유재규·김효석 의원 외 25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02년9월3일 남경필·김근태·김용학·김일윤·김정숙·김홍신·김희선·박명환·박창달·신기남·신현태·안상수·안영근·오세훈·원유철·원희룡·윤경식·윤여준·이원형·이호웅·정병국·한화갑·현경대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002년9월5일 김홍신·심재권·남경필·고진부·김태홍·서상섭·이성현·신기남·김부겸·김용학·박진·이미경·김원웅·권기술·이호웅·김성순·김문수·박인상·원희룡·최용규·김명섭·송영길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2년10월23일 이종걸·최용규·임종석·이상수·정세균·임채정·신기남·김태홍·

천정배·송영길·조한천·김성호·이재정·유재건·김택기·박인상·이미경·김성순·곽치영·허운나·최선영·조순형·조성준·김희선·김원기·이강래·정동영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2002년11월4일 이강래·이낙연·이종걸·장재식·정동영·함승희·정동채·신기남·문희상·김효석·배기운·김태홍·이호웅·설송웅·김원웅·김영환·임종석·정세균·송영길·김성호·원유철·천정배·신계륜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2002년11월5일 정범구 의원 외 22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02년11월9일 심재권·김홍신·서상섭·신기남·김방림·설훈·박양수·정장선·정범구·김운용·정동영·김충조·김덕규·김영진·김성순·김근태·김홍일·김영환·강운태·임종석·김원기·조배숙·김희선·김화중·천용택·고진부·장성원·최용규·김택기·김태홍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3년1월24일 심재철·강창성·윤여준·최병렬·맹형규·이연숙·김병호·이재오·김정숙·서병수·이원창·하순봉·조용규·박원홍·윤한도·신현태·정창화·황승민·현경대·윤영택·황우여·서상섭·엄호성·박종희·이경재·권기술·김경천·장성원·박명환·원희룡·양정규·신영국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희욱 의원 발의)

(2003년2월11일 조희욱 의원 외 14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2003년4월1일 송석찬·최선영·조한천·이희규·박병석·오영식·이미경·유용태·홍재형·김경천·김충조·김희선·유재규·김성순·김옥두·장태완·최명현·이종걸·고진부·이훈평·장성원·심재권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03년4월25일 심재권 · 정의화 · 김원웅 · 김근태 · 최영희 · 유재건 · 김옥두 · 김운용 · 이미경 · 박양수 · 신기남 · 김희선 · 김원기 · 김경천 · 김성호 · 남궁석 · 이창복 · 유재규 · 김태홍 · 최용규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용균 의원 대표발의)

(2003년7월2일 김용균 · 이원형 · 김덕규 · 김성조 · 김성호 · 김옥두 · 김종하 · 김대식 · 박상규 · 박상천 · 박인상 · 박주선 · 배기운 · 송석찬 · 심규철 · 이강래 · 이낙연 · 이상배 · 이승철 · 이우재 · 이재창 · 장성원 · 조응규 · 이협 · 천용택 · 최명헌 · 홍재형 의원 외 30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3년7월16일 이주영 · 강삼재 · 권기술 · 김형오 · 엄호성 · 유시민 · 윤경식 · 이경재 · 이윤성 · 장성원 · 하순봉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3년7월19일 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재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안경률 · 오경훈 · 송광호 · 이윤성 · 하순봉 · 서상섭 · 박진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

(2003년8월13일 심규철 · 엄호성 · 이주영 · 임인배 · 권영세 · 오경훈 · 전용학 · 권기술 · 이인제 · 백승홍 · 박시균 · 박종근 · 정갑윤 · 오세훈 · 이인기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

(2003년8월23일 권태망 · 오경훈 · 강창희 · 정문화 · 현승일 · 남경필 · 유재규 · 박명환 · 권기술 · 김학송 · 이경재 · 박혁규 · 김형오 · 윤한도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2003년8월29일 전갑길 · 이희규 · 정철기 · 박상규 · 이정일 · 김운용 · 배기운 · 조배숙 · 이낙연 · 이강래 · 최선영 · 신기남 · 이훈평 · 송석찬 · 강숙자 의원 외 1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1일 박주선 의원 외 23인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3일 권태망 · 김충조 · 유재규 · 이주영 · 목요상 · 전용학 · 민봉기 · 권철현 · 박시균 · 엄호성 · 이용삼 · 원유철 · 김성조 · 박혁규 · 신현대 · 윤두환 · 도종이 · 안경률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덕규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7일 김덕규 · 이낙연 · 박양수 · 김홍신 · 장성원 · 황우여 · 권기술 · 이근진 · 이해봉 · 김택기 · 박상규 · 안상수 · 추미애 · 정대철 · 이종걸 · 오세훈 · 최용규 · 천용택 · 신계륜 · 김희선 · 임채정 · 유재건 · 이부영 · 정창화 · 이창복 · 정동영 · 안영근 · 최연희 · 박진 · 이상희 · 김종하 · 이완구 · 임종석 · 이우재 · 정장선 · 최병국 · 송영길 · 박헌기 · 심재권 · 이강래 · 홍문종 · 정세균 · 남궁석 · 박병석 · 김형오 · 유시민 · 이협 · 권오을 · 장영달 · 이해찬 · 현승일 · 신영국 · 이병석 · 이강두 · 전용학 · 김근태 · 김부겸 · 장광근 · 이상수 · 전갑길 · 강창희 · 고흥길 · 문석호 · 홍재형 · 배기선 · 송석찬 · 김태홍 · 서상섭 · 김학원 · 김중호 · 최영희 · 박인상 · 민봉기 · 임진출 · 강봉균 · 김덕배 · 김영춘 · 이한동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

(2003년12월8일 김형오 · 박명환 · 이원형 · 김락기 · 김덕규 · 박인상 · 박재욱 · 권기술 · 박근혜 · 심재권 · 안상수 · 이종걸 · 서병수 · 황우여 · 정철기 · 하순봉 · 이양희 · 이방호 · 진용원 · 현경대 · 박종근 · 전용학 · 이성현 · 유홍수 · 이상배 · 김덕룡 · 정동영 · 정갑윤 · 서청원 · 안동선 · 강창희 · 김용갑 · 이상희 · 김학송 · 이주영 · 윤영탁 · 원희룡 · 김부겸 · 김동욱 · 양정규 · 박진 · 박헌기 · 권철현 · 김무성 · 김병호 · 강재섭 · 정의화 · 김정숙 · 권태망 · 안경률 · 김진재 · 김광원 · 민봉기 · 이인기 · 박혁규 · 조한천 의원 발의)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2년2월26일 정장선 · 김성순 · 김성호 · 김

용학 · 김원웅 · 김태홍 · 문석호 · 박용호 · 박인상 · 박종희 · 송영길 · 신현대 · 안영근 · 원유철 · 유재건 · 이종걸 · 이창복 · 임종석 · 장성원 · 장영달 · 장정언 · 정동영 · 정범구 · 정철기 · 천정배 · 최용규 의원 발의)

**政黨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2년9월2일 김원웅 · 이재정 · 김홍신 · 김희선 · 김태홍 · 김영춘 · 이창복 · 박상희 · 송석찬 · 윤철상 · 배기선 · 김택기 · 정동영 · 서상섭 · 이미경 · 조정무 · 조재환 · 김근태 · 김덕룡 · 조희욱 · 한화갑 · 송광호 · 유재규 · 박명환 · 김성호 · 심재권 · 김경천 · 임종석 · 이호웅 · 정범구 · 장영달 · 송영길 · 정대철 · 이정일 · 최영희 · 강현욱 · 유재건 · 전갑길 · 김명섭 · 고진부 · 설송웅 · 박양수 · 강운태 · 신계륜 · 조배숙 · 김화중 · 박주선 · 남궁석 · 전용학 · 박병석 · 추미애 · 조한천 · 김덕규 · 최용규 · 설훈 · 홍재형 · 김성순 · 정장선 · 박인상 · 천정배 · 이훈평 · 조성준 · 이희규 · 장정언 · 박치영 · 원유철 · 함승희 · 김윤식 · 강성구 · 김기재 · 김운용 · 김경재 · 박용호 · 최선영 · 허운나 · 신기남 · 김효석 · 배기운 · 장태완 · 최명헌 · 김원기 · 정세균 · 박병운 · 김덕배 · 김영진 · 문희상 · 송훈석 · 조순형 · 송영진 · 최재승 · 김영배 · 이용삼 · 천용택 · 박상규 · 이윤수 · 김충조 의원 발의)

**政黨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3년1월24일 심재철 · 강창성 · 윤여준 · 최병렬 · 맹형규 · 이연숙 · 김병호 · 이재오 · 김정숙 · 서병수 · 이원창 · 하순봉 · 조웅규 · 박원홍 · 윤한도 · 신현대 · 정창화 · 황승민 · 현경대 · 윤영탁 · 황우여 · 서상섭 · 엄호성 · 박종희 · 이경재 · 권기술 · 김경천 · 장성원 · 박명환 · 원희룡 · 양정규 · 신영국 의원 발의)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3년7월19일 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재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안경률 · 서상섭 · 박진 · 하순봉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대표발의)**

(2001년8월16일 박승국 · 이인기 · 이재오 · 박혁규 · 박종희 · 이방호 · 손희정 · 심규철 · 이

상배 · 권오을 · 손태인 · 박창달 · 윤두환 · 정병국 · 이연숙 · 김광원 · 백승홍 · 정인봉 · 안경률 · 박세환 · 황우여 · 윤영탁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2001년12월7일 이해봉 · 강제섭 · 고흥길 · 권기술 · 권오을 · 김기춘 · 김정숙 · 박승국 · 안상수 · 오세훈 · 윤경식 · 이주영 · 전재희 · 정문화 · 정병국 · 정형근 · 조정무 · 최연희 · 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2년2월26일 정장선 · 김성순 · 김성호 · 김용학 · 김원웅 · 김태홍 · 문석호 · 박용호 · 박인상 · 박종희 · 송영길 · 신현대 · 안영근 · 원유철 · 유재건 · 이종걸 · 이창복 · 임종석 · 장성원 · 장영달 · 장정언 · 정동영 · 정범구 · 정철기 · 천정배 · 최용규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02년10월26일 신기남 · 김경재 · 김근태 · 김상현 · 김성호 · 김원기 · 김원웅 · 김태홍 · 김희선 · 송영길 · 심재권 · 유재건 · 이강래 · 이미경 · 이상수 · 이종걸 · 이재정 · 이호웅 · 임종석 · 정동영 · 정동채 · 정범구 · 정세균 · 천정배 · 최용규 · 추미애 · 함승희 · 허운나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발의)**

(2003년4월4일 박승국 의원 외 45인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3년7월19일 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재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안경률 · 오경훈 · 송광호 · 권오을 · 하순봉 · 서상섭 · 박진 의원 발의)

이상 34건 2004년1월12일자 회부됨

○請願回附

**대통령선거일전6월내창당금지에關한청원**

(2002년8월26일 대구 북구 산격2동 491 럭키아파트 1동 407호 박해봉으로부터 박승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關한청원**

(2002년10월22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전국연맹빌딩7층 2002대선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남주로부터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2002년11월6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성유보로부터 김태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2003년11월7일자 회부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4월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로부터 김문수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2003년5월1일자 회부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6월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로부터 이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003년7월2일자 회부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의견에관한청원**

(2003년9월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외 1인으로부터 이강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3년9월9일자 회부됨

**국회의원선거구획정방식개선에관한청원**

(2003년12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럭키아파트 108-1201 정진섭으로부터 이성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3년12월18일자 회부됨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4월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로부터 김문수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2003년5월1일자 회부됨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6월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위원장 최열로부터 이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003년7월2일자 회부됨

**정당법개정의견에관한청원**

(2003년9월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외 1인으로부터 이강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3년9월9일자 회부됨

**정치자금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12월1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1006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은희 외 1인으로부터 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치자금에관한법률및공직자윤리법개정에관한청원**

(2002년10월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 전국연맹7층 2002대선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 최병모로부터 이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2002년11월7일자 회부됨

**정치자금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4월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로부터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3년5월1일자 회부됨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3년6월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로부터 이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003년7월2일자 회부됨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의견에관한청원**

(2003년9월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외 1인으로부터 이강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3년9월9일자 회부됨